초등 학생 선도 규정

[시행 2022. 03. 01. 초등학생생활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와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격 존중)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 징계는 학생의 평소 품행,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선도 위주로 처리한다.
제3조(공정성·일관성 유지) 학칙 위반 사안에 대하여 징계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제4조(선도 방법) 선도 방법에는 징계가 있다. 단,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초등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들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도 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 위원회는 교감, 학년부장교사, 학년기획교사, 외부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부모회에서 추천받은 초등 학부모대표 2.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영사 혹은 경찰공무원 3.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부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생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제7조(기록 및 사무처리)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심의결과)은 학생생활부장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② 학생생활부장교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은 관련 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공개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서도 절차

□ 제8조(사안 발생) 학생의 이탈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별표1] 세부 징계 기준의 교내봉사 이상으로 판단되는 사안

의 경우. 교사는 학생생활부로 사안을 송부한다. □ 제9조(관찰 면담) 학생생활부로 인계된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교감과 학생생활부장이 논의하여 선도위원회 회 부 여부를 판단한다. □ **제10조(위원회 회부)** 학생선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 학생생활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학교장에게 위원회 소 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 제11조(선도 사안 서면보고) 학생생활부장은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서면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안 발생 일시 2. 사안 발생 장소 3. 사안 연루자 4. 사안 내용 5. 사안 발생 사유 □ 제12조(위원회 소집)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을 결정한다. □ 제13조(2차 심의) ① 학생생활부장은 사안을 설명하고 위원들과 질의 및 응답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학생 또는 학 생의 보호자는 부득이한 경우 의견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안설명, 의견청취, 진술 등을 토대로 선도 여부 및 징계 양정을 심의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징계의결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생생활부장교사는 의결 사항을 정리하여 학교장의 결재 를 득한다. ⑤ 징계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뚜렷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권고 전학 처리한다. □ **제14조(징계의 종류)** 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반성문). 교내봉사. 출석정지, 특별 교육이수, 권고 전학 중 에서 선택하여 징계하며, 세부징계기준은 [별표 1]에 준한다. ②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까지, 연간 30일까지 선택하여 징계한다. ③ 출석정지 기간 중, 상해시 민항취 내의 사회봉사기관(양로원, 특수병원, 고아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그 활동 기간만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 중의 봉사활동 기간은 3일은 1일, 5일은 2일, 7일은 3일, 10일은 4일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 1일 6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할 때 출석으로 인정한다. ⑥ 출석인정 봉사활동 확인서는 당해 봉사활동 기관의 장(혹은 봉사 담당책임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것만 유효하다. ⑦ 출석정지(1회 10일까지)와 교내봉사(1회 10일까지)를 함께 징계할 수 있다. ⑧ 특별교육이수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에서 1회 10일까지 이수한다. □ 제15조(학교장 재심요구 및 결의) ① 학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 을 명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의 재심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소집해야 한다.

- ④ 재심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재심의결 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 ⑥ 학교장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전체 교무회의를 통한 재심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의결은 초등 교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 **제16조(집단폭행 또는 성관련 사건에 대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아래 항에 해당되는 지도를 중복으로 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전학권고
 - 6. 기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제1.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 □ **제17조(집단폭행 또는 성관련 사건에 대한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 ① 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 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지도를 중복으 로 할 수 있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3. 학급교체
 - 4. 권고 전학
 - 5. 교내 봉사
 - 6. 출석정지(출석정지+교내봉사)
 -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가해학생이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 제18조(통보) ①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통보한다.
 - 1. 학생과 학부모에게 징계개시 1일 전까지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한다.
 - 2. 징계내용, 징계기간 중 준수사항, 지도 프로그램, 학부모 협조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학생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학생생활부장 또는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제4장 해제

- □ **제19조(징계해제)** ①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내려졌던 징계 및 조치가 끝나는 대로 각서를 제출하여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② 뚜렷한 이유 없이 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권고전학 처리한다.

□ 부 칙 <2022. . .>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부징계기준(제18조 제1항 관련)

	세 부 내 용	징계의 구분						
분류				출석정지				
		반성문	교내봉사	출석정지	교내봉사	권고전학	비고	
	1.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0	0	0	0			
	2.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욕설 및 폭언, 폭행 등)을 한 학생	0	0	0	0	0		
	3.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0	0	0	0			
			_					
	4.수업을 거부한 학생	0	0					
수업	5.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0	0	0	0	0		
	6.백지동맹을 주도했거나 선동한 학생	0	0	0	0	0		
	7.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0	0	0	0	0		
	8.수업 중 음향기기를 청취한 학생(2회 이상 발견)	0						
	9.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2회 이상 발견)	0						
	10.교내·외 폭행 학생	0	0	0	0			
	11.교내·외 집단폭행 주동 및 가담 학생	0	0	0	0	0		
	12.따돌림(집단적 따돌림 포함) 주동 및 가담 학생	0	0	0	0	0		
	13.괴롭힘 주동 및 가담 학생	0	0	0	0			
	14.교내·외 금품 및 물품 절취 학생(1차) - 출석정지/퇴학/학부모 각서	0	0	0	0			
	15.교내·외 금품 및 물품 절취 학생(중·고 통합 2차) - 권고전학 및 퇴학					0		
	16.교내·외 협박, 감금, 금품 및 물품 갈취 학생,	\circ	0	0	0	0		
	17.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빌려서 안 가져오는 경우	0	0	0	0			
	18.타인에게 강제로 아르바이트를 시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0	0	0	0			
	19.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0	0	0	0	0		
	20.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circ	0	0	0			
	21.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0	0	0	0			
	22.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훼손하여 사실상·감정상 본래의 용 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0	0	0	0			
준법	23.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0	0	0				
공중	24.학생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학생	0	0	0	0			
도덕	25.공안국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0	0	0	0	0		
	26.공안국에 구속, 석방된 학생	\circ	0	0	0			
	27.인장 또는 제증명(사인)을 위조 또는 고의로 파기한 학생	0	0	0	0			
	28.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0	0	0		
	29.불건전한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0	0	0	0	0		
	30.형법상의 유죄로 판결된 학생			0	0	0		
	31.학생을 선동하여 교칙을 문란케 한 학생	0	0	0	0	0		
	32.교내 시설을 고의로 파손 및 훼손한 학생	0	0	0	0			
	33.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0	0	0	0	0		
	34.도박을 한 학생	0	0	0	0			
	35.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0	0	0				
	36.불온한 물건, 불량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0					
	37.성희롱(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한 경우), 성추행,			_	_	_		
	성폭행을 한 학생	0	0	0	0	0		
	38.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9.타인에게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경	0	0	0	0			
	39.다인에게 성필의 의사를 표시하여 인격적으로 무지하는 성 우	0	0	0	0			

		징계의 구분					
분류	세 부 내 용		교내봉사	출석정지			
		반성문		출석정지	교내봉사	권고전학	비고
준법 ·	40.(전동)오토바이 운전 및 폭주하는 학생, (전동)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낸 학생	0	0	0	0		
공중 도덕	41.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을 가지고 그 학생을 따라 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피 해를 주는 학생(스토킹)	0	0	0	0	0	
용의 복장	42.용의복장 규정에 어긋나는 복장을 한 학생	\circ	0	0	0		
	43.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1차) - 반성문/학부모 소환 및 각서/1차 경고장 발급	0					
	44.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초등, 중등, 고등 분리하여 합산) -학부모 소환 및 각서/2차 경고장 발급	0					
통학	45.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초등, 중등, 고등 분리하여 합산) -학부모 소환 및 각서/1주일 통학버스 탑승 제한/3차 경고장 발급	0					
	46.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 - 학부모 소환 및 각서/통학버스 1개월 통학버스 탑승 제한/4 차경고장 발급	0					
	47.통학버스 이용시 보모 및 기사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 - 통학버스 탑승 제한(전출 및 졸업까지)1/5차 경고장 발급	0					
	48.미인정 결석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	0	0	0	0	0	
근태	49.무단외출 및 월담 학생	0	0	0	0	0	
	50.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0	0	0	0	0	
	51.흡연(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으로 1차 적발된 학생- 반성문/학부모 소환 및 각서	0					
흡연 및	52.흡연(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으로 2차 적발된 학생 - 출석정지			0	0		
약물 오남 용	53.흡연(흡연용품을 소지한 학생 포함)으로 3차 이상 적발된 학 생 - 출석정지/학부모각서					0	
0	54.음주한 학생 및 주류 소지, 주점을 출입한 학생	0	0	0	0	0	
	55.향신성 약품 및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복용한 학생	0	0	0	0	0	
	56.학교의 동의 없이 서클을 조직한 운영한 학생 및 가담한 학 생	0	0	0			
집단	57.불순한 의도로 학생을 선동하거나 이에 가담한 학생	0	0	0			
행동	58.불법 집회나 불량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0	0	0			
	59.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0	0	0			

		징계의 구분					
분류	세 부 내 용	반성문	교내봉사	출석정지			
				출석정지	교내봉사	권고전학	비고
	60.사이버머니 및 게임 아이템을 빼앗은 경우(절도)	0	0	0			
	61.사이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의나 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악플, 상대방의 동의 없이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 또는 촬영된 사진을 친구들끼리 돌려보거나 SNS상에 올리는 행위)	0	0	0	0	0	
	62.사이버 상이나 매체를 이용해 공공연히 진실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0	0	0	0	0	
	63.학교 네트워크 통신망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0	0	0			
사이	64.컴퓨터 바이러스를 고의로 유포한 학생	0	0	0			
관련	65.학내망의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0	0	0	0	0	
	66.불법 복제물을 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학생	0	0				
	67.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학생	0	0	0	0	0	
	68.음란 화상 채팅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0	0	0	0		
	69.불법 게임 머니를 사고판 학생	0	0	0			
	70.학교에 대해 고의적인 비방 글을 올린 학생	0	0	0	0	0	
	71.1년 이내에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때에는 가중 처벌하며, 학교 급(중·고)과 상관 없이 교내봉사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4회 이상 받을 때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72.동일학년 내에서 선도확인서 누적 수가 4매 이상이 되면 선 도위원회에 회부하여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73.징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줄 수 있다.						
	74. 동일 학년 내에서 선도확인서 누적 수가 6매 이상이 되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0	0	0		
기타	75. 의사와 관계없이 호의 또는 악의을 가지고 그 학생을 따라 다니는데, 그런 행동과 관련하여 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피 해를 주는 학생(스토킹)		0	0	0	0	
	76. 사안 발생시 사안 대상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경우(최초 진술서)						가중처벌
	77. 사안 발생시 사안 대상학생이 사안을 제보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최초 진술서)						징계경감
	78.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제보자나 사실대로 진술한 학생에게 보복을 한 행위가 있을 때					0	

[별표 2] 휴대폰 및 음향기기 관련 기준(세부징계기준 9번 관련)

휴대폰 및 · 수업 시간 중 사용은 절대 금지한다.(적발 시 회수) 음향기기 - 회수 후 일주일간 학교에서 보관한다.

[별표 3] 통학차량 승차규칙 및 행동 안내(세부징계기준 43~47번 관련)

□ 학교버스 탑승 규칙

통학 차량은 학교 시설의 연장으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이 통학 차량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 가. 학생들은 정해진 통학 차량를 타야하고, 통학 차량 담당교직원의 허가 없이는 다른 버스를 탈 수 없다.
- 나. 통학 차량을 탑승한 학생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다. 버스가 운행 중에는 몸을 앞쪽으로 향해서 앉아야 하며,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일어서지 않는다.
- 라. 버스 안에서는 먹거나 마실 수 없으며, 버스 안이나 창밖으로 물건 등을 버리지 않는다.
- 마. 안전을 위하여 팔, 다리, 머리 등을 버스 밖으로 내밀지 않는다.
- 바. 통학 차량은 공동시설이므로 큰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한다.
- 사. 통학 차량 안에 있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지 않는다.
- 아. 학생들은 차량담당 지도교사, 운전기사, 차량보조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자. 통학 차량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선도한다.
 - 통학차량 규칙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에는 현장에서 훈계 또는 지도하고, 무거운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하며, [별표 1] 세부징계기준에 따라 통학차량 탑승을 제한한다. 단, 가벼운 규칙 위반으로 3회 이상 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한다.
 - 통학차량과 관련하여 경고장을 3회 이상 발부받은 학생에게는 정도에 따라 통학차량 탑승 금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통학차량 규칙 위반 정도 >

▶ 가벼운 위반

- 통학차량 운행 중에 이동한 경우
- 버스 안에서 먹거나 마신 경우
- 버스 밖으로 물건을 버린 경우
- 통학차량 안에서 소란스럽게 한 경우

□ 무거운 위반

- 통학차량 담당교직원의 허가 없이 다른 버스를 탄 경우
- 통학차량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통학차량 안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 통학차량 담당 지도교사, 운전기사, 차량 보조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버스 안에서 장난을 심하게 하거나 서로 다툰 경우